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26호 2010. 9. 15.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0-130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 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500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 송달..... 2
- 정선군공고 제2010-501호 지방세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3
- 정선군공고 제2010-503호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협의독려 및 협의경위서 제출통보 공시송달 공고..... 4
- 정선군공고 제2010-512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관련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5
- 정선군공고 제2010-518호 2010년도(FY2009)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 6
- 정선군공고 제2010-523호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1
- 정선군공고 제2010-524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35
- 정선군공고 제2010-527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37
- 정선군공고 제2010-528호 2010년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 공고..... 40
- 정선군공고 제2010-530호 정선군타임캡슐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43
- 정선군공고 제2010-531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7
- 정선군공고 제2010-538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58
- 정선군공고 제2010-539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6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10-130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야를 사방지로 지정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10. 9. 1.

정 선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적 (ha)	사방종류	소유자
군	읍,면	리	지번					
정선	남면	광덕	산235번지외 2필지	임외2	423,434	0.055	사방댐	배미자 외2

※ 필지별 내역은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정선군청 환경산림과 비치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3. 지정대상 : 사방사업 실행지

4. 지정년월일 : 2010. 9. 1.

5.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는 정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의 벌채, 토석, 나무 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6. 기타 사방지의 지정 구역 도면은 정선군 환경산림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함.

사방지 지정 명세서

위 치			지 번	지목	면 적 (㎡)	지 정 면 적 (ha)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주 소	성 명
계			3 필지		423,434	0.055		
정선	남	광덕	산235	임야	160,161	0.026	서울 서초구 양재동 65-1 범양빌라-201	배미자
			1181	하천	261,293	0.020		국(건설부)
			1156	전	1,980	0.009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54	이동수

정선군공고 제2010-500호

공 시 송 달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10.09.01 ~ 2010.09.15(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성 명	주 소	적발일시와 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1	김병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17	2010.04. 12 사북읍 사북리 사북역 가건물 “대한민국” 옆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100,000원
2	신현옥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24(8/9)	2010.07.01 사북리 해원가든 공영주 차장 도로변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100,000원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선군청 환경산림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전화 033-560-2336 또는 560-2334)
(팩스 000-560-2589)

2010. 09. 01.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0-501호

공 시 송 달

1. 성 명 : 신양자 외 809명(정선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2. 주소또는거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5-11

3.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부 고지서

4. 서류의 내용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2010년 8월 중 귀하의 주소지·거소지·사무소 등록지로 우편고지(일반우편·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기한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10년 9월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2.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0-5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선군고시 제2010-15호로 정선군 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대상자에게 보강금 협의 독려 및 협의경위서 제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9. 2.

정 선 군 수

- 제 목 :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협의독려 및 협의경위서 제출통보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0. 09. 03. ~ 2010. 09. 16(14일간)
- 송달대상 : 2명
- 의견제출사항 : 이면 “별첨”

읍면	리	지번	편입 면적 (㎡)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지분	소유자	토지보상금(원)	비고
신동읍	고성리	산8-1	2,028	653/1306	신동읍 우치리 775-1 황대식	1,774,500	
				653/1306	신동읍 예미리 682-29 황병수	1,774,500	
		산8-2	1,983	653/1306	신동읍 우치리 775-1 황대식	1,735,125	
				653/1306	신동읍 예미리 682-29 황병수	1,735,125	
		산8-3	811	653/1306	신동읍 우치리 775-1 황대식	790,725	
				653/1306	신동읍 예미리 682-29 황병수	790,725	
		산8-4	326	653/1306	신동읍 우치리 775-1 황대식	317,850	
				653/1306	신동읍 예미리 682-29 황병수	317,850	

- 의견제출처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TEL : 033-560-2330, FAX : 033-560-2589)

6. 기 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행정절차 이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512호

공 시 송 달

1. 제 목 :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관련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0.09.07 ~ 2010.09.21(15일간)

3.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남미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번지(8/3) 고한아 파트 나동 408호	71.3.10	2010.6.11	고한시장 쓰레기 배출장소	종량제봉투 미사용	100,000원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때마다 1.2%의 증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 드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전화 033-560-2336 또는 330-2334)
(팩스 000-560-2589)

2010. 9. 7.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0-518호

2010년도(FY2009)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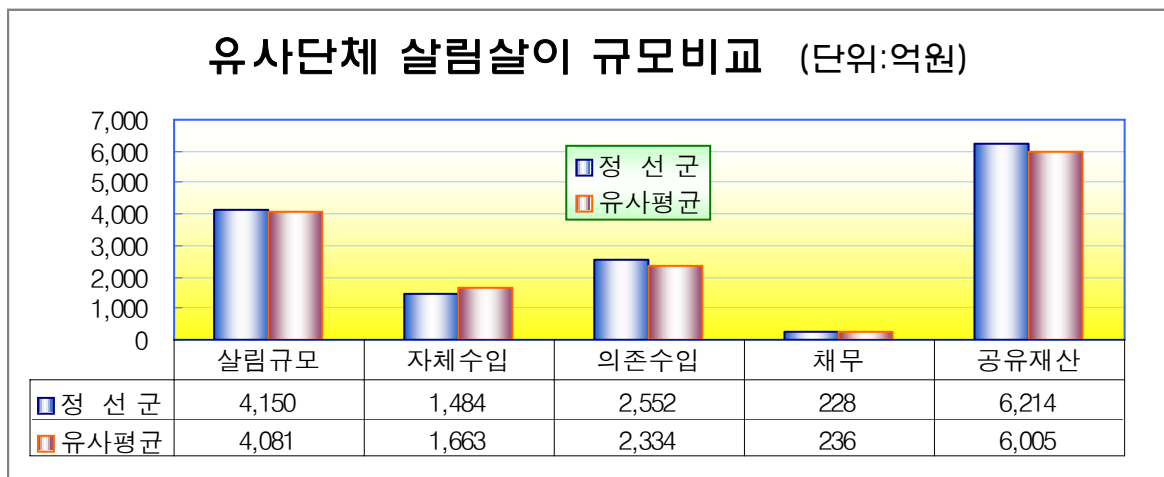
2010. 9. 8.

정 선 군 수

□ 우리 군의 2009년 살림규모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는 4,150억원으로, 전년대비 2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84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4만원입니다.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553억원으로 우리 군 살림규모의 61.5%입니다.
-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88억원과 태백권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함에 따라 군의 채무는 228억원이며, 군민 1인당 채무액은 56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09년 토지 외 4종(2,20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4건(992억원)을 매각하여, 총 6,21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2009년 살림규모는 군단위 유사단체 평균액 (4,081억원)보다 69억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단체 평균액보다 179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단체 평균액보다 218억원이 많습니다.
- 총 채무액은 유사단체 채무액보다 8억원이 작은 규모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액 6,214억원은 유사단체 평균액(6,005억원)과 비교하여 209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 군의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41%이며(전국 평균 50.2%), 자체수입에서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17%(전국 평균 73.3%)입니다.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 2009년도 살림살이, 의존재원, 공유재산액, 채무의 규모는 유사단체 보다 높음으로 집계 되었으며, 다만, 자체수입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적인 2009년 살림살이 규모는 2008년도와 비교하면 일정부분 성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부내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참조

특 수 공 시

2010 특수공시 대상사업 내역

【기준년도 : 2009년도】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비 고
1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2008 ~ 2011년 - 종합체육시설 조성 1식	817	
2	HAPPY 아리 아파트 건립	2007 ~ 2010년 - 아파트 2동 140세대	135	
3	정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2008 ~ 2009년 - 사회복지관 1동(지상3층)	97	
4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	2005 ~ 2010년 - 봉안당1동, 봉안묘역, 매장묘역	157	
5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007 ~ 2011년 - 소득기반시설, 관광휴양시설 등	68	
6	예미 농공단지 조성	2009 ~ 2010년 - 폐수처리시설, 관리동 등	168	
7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07 ~ 2013년 - 생물서식처조성, 퇴적물준설 등	136	
8	폐광지역 상수도 정비사업	2008 ~ 2010년 - 배수지확장(9,000톤)	75	
9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	2002 ~ 2011년 - 아리랑전수관, 오작교, 돌다리 등	133	
10	타임캡슐 공원조성	2008 ~ 2010년 - 타임캡슐 5,868개, 편의시설 등	35	
11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	2009 ~ 2010년 - U형전망대 1식, 편의시설 등	10	

1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추진부서 : 관광문화과 생활체육담당, ☎ 560-2254】

◇ 종합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군민의 체력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대회 및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정선읍 애산리 467번지 일원

나. 사업기간 : 2009 ~ 2011년

다. 사 업 비 : 817억원(국비 817)

라. 사업내용

- o 주경기장(12,154석),보조경기장(1,000석규모)
- o 실내체육관(2,000석), 국궁장(28사대), 테니스장(8면)
- o 생활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2. 추진상황

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04. 6 ~ 2005. 1월

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006. 11 ~ 2008. 8월

다. 철도관통 지하차도 개설공사 : 2008. 4 ~ 2009. 11월

라. 공사착공 : 2008. 12월

o 공사추진 현황

- 주경기장 골조시공(70%), 실내체육관 골조시공(80%)
- 국궁장 골조시공(40%), 부대토목공사(30%)

마. 준공예정일 : 2011. 6월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이후
81,773	15,000	14,739	14,948	37,086

3. 사업효과

가.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종합체육시설 확보

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교류의장 마련

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사업현장



2

Happy아리 아파트 건립

【추진부서 : 건설도시과 주택담당, ☎ 560-2471】

◇ 폐광지역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택 철거 등 주거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도모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군립아파트 건립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나. 사업기간 : 2007 ~ 2011년
 다. 사 업 비 : 135억원(군비 135)
 라. 사업내용 : 아파트 2동(15층), 140세대

2. 추진상황

- 가. 2007년 :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나. 2008년
 ○ 실시설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공사계약
 다. 2009년 : 공사 착공
 ○ 준공예정 : 2011. 08월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 이후
13,500		8	386	13,106

3. 사업효과

- 가. 고한, 사북 등 폐광지역 저소득 주민 주택난 해소
 나. 타지역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 예방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사업현장



3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진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복지시설담당, ☎ 560-2972】

◇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 나. 사업기간 : 2008 ~ 2009년
- 다. 사 업 비 : 97억원(국비 90, 도비 7)
- 라.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 1동(연면적 4,991.6㎡, 지하1층·지상3층)
 - 아동·청소년·노인관련시설, 강당, 식당, 정보화실 등

2. 추진상황

- 가. 기본 및 실시설계 : 2008. 2. 25
- 나. 건축허가 협의 : 2008. 3월
- 다. 공사 착공 : 2008. 6. 18
- 라. 공사 준공 : 2009. 11. 26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7년	'08년	'09년
9,660		500	2,000	7,160

3. 사업효과

- 가. 늘어나는 지역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나.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다. 군민 여가 선용 등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공사현장



4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경로복지담당, ☎ 560-2971】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묘지의 집단화·공원화로 장사문화를 개선하며, 날로 증가하는 묘지수요와 공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성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여량면 남곡리 산27번지 일원

나. 사업기간 : 2005 ~ 2010년

다. 사 업 비 : 157억원

(국비 14, 폐광기금 82, 도비 2, 군비 59)

라. 사업내용

- 봉 안 당 : 1동(1,807m²) / 11,200기 중 1,816기 조성
- 묘 역 : 봉안묘역 5,772기(11,337m²), 매장묘역 948기 (7,376m²)
- 편의시설 : 관리동(식당) 1동, 파고라 2개소, 주차장 2개소 등

2. 추진상황

가. 기본 설계 : 2002. 5. 11

나. 실시 설계 : 2004. 9. 15

다. 공사 착공 : 2005. 3. 14

라. 공사 준공 : 2010. 1. 31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00~'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5,725	2,667	2,008	1,000	2,650	2,900	4,500

3. 사업효과

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분별한 산림훼손 예방

나.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수요와 공급에 적정 도모

4. 관련사진

■ 봉 안 당



■ 봉안묘역



5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 560-2373】

◇ 농촌마을 경관개선, 관광기반구축,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농촌사회유지를 도모.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임계면 도전권역(도전1·2리, 직원1·2리, 가목리)
 나. 사업기간 : 2007 ~ 2011년
 다. 사 업 비 : 67.8억원(국비 45, 도비 5, 군비 12, 자부담 5.8)
 라. 사업내용 : 지역역량 강화,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 관광휴양시설 등

2. 추진상황

- 가. 2008년 : 기본계획 인가, 한국농촌공사 사업위탁 등
 나. 2009년 : 지역역량 강화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
 ○ 마을 리더 및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사업
 ○ 산촌경관조성사업, 운동휴양시설사업 완료
 ○ 야생화 육묘장 완료 및 생약초 요양시설 추진
 다. 2010년
 ○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 생약초 요양시설 완료 및 소득기반시설 추진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 이후
6,786	394	1,425	1,774	3,193

3. 사업효과

- 가. 마을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자발적 참여의지를 고취하고 주민 지역 역량강화에 기여
 나. 농촌정주공간을 정비하여 살기 좋고 건전한 농촌사회 유지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사업현장



〈홍보관 및 방문자센터〉



〈생약초요양시설〉



〈야생화육묘장〉



〈운동휴양시설〉

6

예미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부서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 ☎ 560-2351】

◇ 폐광지역의 지역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대

나. 사업기간 : 2009 ~ 2010년

다. 사 업 비 : 168억원(국비90, 도비76, 군비2)

라. 사업내용 : 부지조성 107,770㎡, 관리실1동, 폐수처리시설1식 등

2. 추진상황

가.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 : 2009. 9월

나. 부지조성 착수 : 2009. 12월

○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착수 : 2010. 5월

○ 관리동(241㎡) 준공 : 2010. 8월

다. 부지조성공사 완료 : 2010. 9월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 이후
16,813	148	700	4,040	11,925

3.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폐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나. 일자리 창출로 폐광지역 인구유입 효과 기대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사업현장



7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부서 : 환경산림과 환경지도담당, ☎ 560-2349】

◇ 폐갱내수 등 각종 오염물질로 훼손된 지장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공간 조성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고한읍 정암사 ~ 남면 무릉리(L=15km)
- 나. 사업기간 : 2007 ~ 2013년
- 다. 사 업 비 : 136억원(국비 95, 기금 29, 도비 6, 군비 6)
- 라. 사업내용 : 생물서식처, 저수하안, 퇴적물준설, 수변식생태 조성

2. 추진상황

- 가. 환경부 사업승인 : 2008. 7. 24.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2008. 8. 30.
- 다. 공사 착공 : 2008. 11. 24.
- 라. 공사 추진 : 1, 2차분 준공, 3차분 추진(공정율 30%)
- 마. 공사 준공 : 2013. 12월(예정)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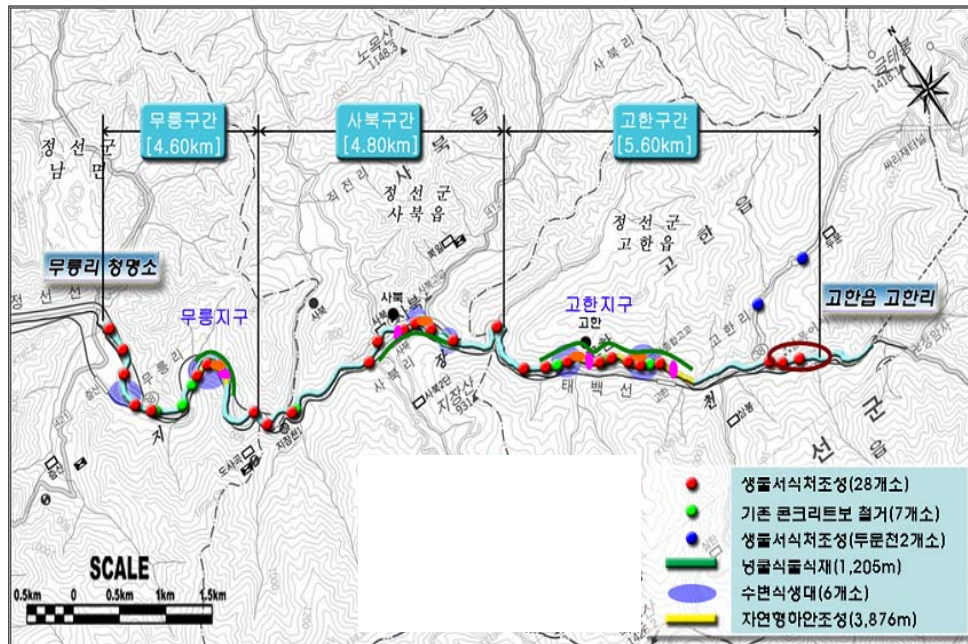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 이후
13,567	269	1,251	1,294	10,753

3. 사업효과

- 가. 지장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한 어족자원 보전
- 나. 하천기능 복원으로 강원랜드와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공사현장



8 폐광지역 상수도 정비사업

【추진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담당, ☎ 560-2523】

◇ 폐광지역내 민자사업 추진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량 증가 광역상수도 추가
수수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확장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고한읍 고한리 고한리(두문배수지)
- 나. 사업기간 : 2008 ~ 2010년
- 다. 사 업 비 : 75억원(국비 75)
- 라. 사업내용 : 배수지확장 (9,000톤)

2. 추진상황

- 가. 2008년 :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 나. 2009년
 - 배수지 확장 3,000톤, 구조물설치 1식,관로정비 1식
 - 공사계약
- 다. 2008년 : 공사 착공
 - 준공예정 : 2010. 10월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 이후
7,500	—	1,000	4,100	2,400

3. 사업효과

- 가. 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 용수공급
- 나. 광역상수도 추가수수에 따른 시설확충으로 용수공급 원활

4. 관련사진

■ 전경사진



■ 현장사진



9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

【추진부서 : 관광문화과 관광진흥담당, ☎ 560-2365】

◇ 아리랑의 시원인 정선아리랑과 뗏목문화, 자연자원을 테마로 하는 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여량면 아우라지 일원
 나. 사업기간 : 2002 ~ 2011년
 다. 사 업 비 : 133억원(국비42, 도비14, 군비77)
 라. 사업내용 : 아리랑전수관, 오작교, 전통돌다리, 진입로, 화장실, 수상체험장, 수변산책로 등

2. 추진상황

- 가. 조성계획 변경(안)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 2008. 5월
 나. 오작교 및 돌다리 설치 완료 : 2009. 6월
 다. 야외무대 설치 완료 : 2009. 10월
 라. 달오름공원 착수 : 2010. 6월
 마. 달오름공원 사업완료 및 개장 : 2010. 11월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 이후
13,321	8,946			4,375

3. 사업효과

- 가. 레일바이크와 연계 관광 활성화 기대
 나. 아리랑의 배경지인 “아우라지”의 체험 관광시설 구축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사업현장



10

타임캡슐 공원 조성

【추진부서 : 관광문화과 관광진흥담당, ☎ 560-2365】

◇ 신동읍 새비재 영화 “엽기적인 그녀” 를 모티브로 타임캡슐을 보관할 수 있는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하여 경기활성화 기여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신동읍 조동리 새비재
 나. 사업기간 : 2008 ~ 2010년
 다. 사 업 비 : 35.6억원(기금20, 군비15.6)
 라. 사업내용 : 타임캡슐-5,868ea, 주차장-1식, 전망데크-1식,
 산책로, 화장실 및 관리사-1동

2. 추진상황

- 가. 타당성 용역 완료 : 2007. 2월
 나. 편입용지 보상 : 2007. 10월 (2필지 / 42,807㎡)
 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8. 5월
 라.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 : 2008. 7월
 마. 1차 사업(주차장 등) 준공 : 2009. 11월
 바. 2차 사업(전망대, 식재 등)설계 완료 : 2009. 10월
 사. 2차 사업 착공 : 2009. 12월 ⇒ 1,000백만원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 이후
3,559	559	2,000	300	700

3. 사업효과

- 가. 타임캡슐공원, 정선아리랑학교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
 나. 연인과 추억의 장소, 기억을 테마로 하는 한류문화 콘텐츠 개발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사업현장



11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

【추진부서 : 관광문화과 관광진흥담당, ☎ 560-2365】

◇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스릴형 전망대를 설치하여 레일바이크, 화암관광지, 정선5일장 등과 연계 관광 인프라 구축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정선읍 북설리 산200번지
- 나. 사업기간 : 2009 ~ 2010년
- 다. 사 업 비 : 10억원(군비 10)
- 라. 사업내용 : U형전망대(캔틸레버)L=11.5m, 주차장-1식, 매표소 및 화장실-1식, 태양광발전시스템-1식

2. 추진상황

- 가. 기본계획 : 2009. 5월
- 나. 기본 및 실시설계 : 2009. 11월
- 다. 국유림 산지전용 허가 : 2010. 4월
- 라. 계약 및 착공 : 2010. 4월 (주식회사 태원)
- 마. 진입로 편입용지 감정평가 : 2010. 6월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08년	'09년	'10년 이후
1,000				1,000

3. 사업효과

- 가. 정선5일장과 연계 관광 활성화 기대
- 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인 도모

4. 관련사진

■ 조 감 도



■ 사업현장



정선군공고 제2010-523호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3.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 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둠(안 제3조)
- 다.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8조)
- 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마.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시설비, 경영, 재정지원과 우선구매, 민간위탁사업 장려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10.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전화 560-23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관련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

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공공기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6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524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수용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9. 9.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경인건설처)
3.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
4. 공고기간 : 2010. 9. 10 ~ 2010. 9. 24 (15일간)
5. 공고장소 :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재결서교부 : 정선군 녹색정책과(033-560-2108)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11-10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용지팀 담당 이광천(02-2096-4334)

공 시 송 달 대 상 자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765kV 신대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재결일 : 2010. 3. 18

성 명	주 소	비 고
전석주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8	
김병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421	
박영중	강원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1450	
권병주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481-15	
한수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6-7	
권준희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588	
권성철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47	
정연우	서울 성파구 잠실동 44 레이크팰리스 116-601	
김금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7 주공@305-803	
박귀복	경기 시흥시 광석동 317	
정석준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157	
고용균	강원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25	
어성갑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397	
전장성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209	
최원규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968	
어일용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835	
전돈규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200	
최갑숙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499	

정선군공고 제2010-527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국도59호선 덕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청 건설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용물건 및 소유자(또는 관계인) : 붙임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사 업 명 : 국도59호선 덕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다. 공고 및 열람기간 : 2010. 09. 11 ~ 09. 25(15일간)

라.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정선군 건설도시과

2. 공고내용

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유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나. 수용재결신청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본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 033-563-0751, 정선군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 033-560-2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용신청 토지조서 1부. 끝.

2010. 09. 10.

정 선 군 수

보상금 내역(토지)

국도59호선 덕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수 용 토 지 의 표 시				보상액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단가/ 금액	성 명	주 소	성 명 / 권리의 종류	주 소
		공부	실제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산111-4	임	임	9	3,550/ 31,950	임병준	(등) 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 369-1 현대아파트 22동 503호	정선군산림조합/ 근저당	(등) 강원 정선 군 정선읍 봉양 리 209-3
소 계	1필지				31,950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534	도	도	324	16,500/ 5,346,000	전세원	(등)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103		
소 계	1필지				863,550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625-1	도	도	497	16,500/ 8,200,500	최정순	(등)강원 정선군 정선 읍 덕우리 503 충북 제천시 화산동 70 번지 8호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등)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서울보증보험주 식회사/가압류	(등)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동대문세무서/ 압류	(등)서울 동대문 구 청량리동 235-5
								서산세무서/ 압류	(등)충남 서산시 석림동 398-10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538	도	도	1,296	16,500/ 21,384,000	최정순	(등)강원 정선군 정선 읍 덕우리 503 충북 제천시 화산동 70 번지 8호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등)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서울보증보험주 식회사/가압류	(등)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동대문세무서/ 압류	(등)서울 동대문 구 청량리동 235-5
								서산세무서/ 압류	(등)충남 서산시 석림동 398-10

의 건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0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정 선 군 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528호

공 고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피해목 제거사업 실행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0년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
2. 사업목적 : 피해목 제거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확산 저지 및 건전한 산림육성
3. 사업내용 : 참나무시들음병 해목 제거 178본
4. 사업기간 : 2010. 9월 ~ 10월
5. 대상사업지 내역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10. 9. 10 ~ 9. 29(20일간)
7. 산주의견 수렴 : 공고기간 내

8.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 033-560-2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대상지 조서 1부. 끝.

2010. 9. 10.

정 선 군 수

2010년 참나무시들음병 제거사업 대상지 필지별 조서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신동	고성리	산18	임	30	7
신동	고성리	산18	임	20	10
신동	고성리	산18	임	28	2
신동	고성리	산18	임	18	5
신동	고성리	산18	임	16	3
신동	고성리	산18	임	14	3
신동	고성리	산18	임	26	2
신동	방제리	산87-114	임	14	18
신동	방제리	산87-114	임	16	9
신동	방제리	산87-114	임	20	1
신동	방제리	산87-114	임	18	5
신동	방제리	산87-114	임	12	2
신동	방제리	산87-114	임	22	1
신동	방제리	산87-114	임	26	2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12	7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14	4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16	2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18	5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20	5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22	1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24	1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26	3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28	1
신동	방제리	산87-144	임	32	2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12	7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14	5

소 재 지				제거대상목 현황	
읍.면	리	지 번	지목	경급	본수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16	6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18	4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22	4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24	2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32	1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26	1
신동	방제리	산87-223	도	20	1
신동	방제리	산119-8	도	12	11
신동	방제리	산119-8	도	14	4
신동	방제리	산119-8	도	16	6
신동	방제리	산119-8	도	18	6
신동	방제리	산119-8	도	20	6
신동	방제리	산119-8	도	32	1
북평	북평리	산277	임	12	9
북평	북평리	산277	임	14	13
북평	북평리	산277	임	16	13
북평	북평리	산277	임	18	9
북평	북평리	산277	임	20	12
북평	북평리	산277	임	22	5
북평	북평리	산277	임	24	5
북평	북평리	산277	임	26	3
북평	북평리	산277	임	28	6
북평	북평리	산277	임	30	3
북평	북평리	산277	임	32	1
북평	북평리	산277	임	36	2

정선군공고 제2010-530호

정선군타임캡슐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정선군 타임캡슐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정선군타임캡슐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2. 예고기간 : 2010. 9. 10 - 9. 29
3. 예고내용 : 붙임 "조례안 참조"
4. 문 의 처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진흥팀 560-2369

첨부 타임캡슐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

2010. 9. 10
정 선 군 수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새비재 일원에 소중한 추억 및 약속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타임캡슐”이란 사진, 편지 등 추억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선군에서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제작한 타원형 용기를 말한다.
2. “이용료”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타임캡슐을 약정된 기간동안 보관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약정기간은 1, 2, 3년으로 구분한다.

제3조(위치) 타임캡슐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 70-13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공원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매립형 타임캡슐 보관시설
2. 관리동 및 화장실
3. 전망데크
4.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제5조(이용료 등) ①매일 9시 이후부터 18시 이전에 공원에 입장하여 타임캡슐을 보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료는 공원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이용권의 효력은 타임캡슐 1대당 1회에 한한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유효기간 등) ①보관 중인 타임캡슐의 유효기간은 약정기간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②타임캡슐의 개봉 및 내용물의 회수는 이용자(최초 신청자를 말한다)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당시 동행인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봉할 수 있도록 약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병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자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귀금속, 귀중품 등을 타임캡슐 내에 투입하는 행위
2. 공원 및 기타 시설물을 손괴, 파손하는 행위
3.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4. 공원 내 취사행위
5. 기타 군수가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①이용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캡슐 내 보관물이 파손 및 분실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공원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정선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

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의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6.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관리·운영

[별표 1]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1년	2년	3년	비 고
타임캡슐 구입	40,000	50,000	60,000	
타임캡슐 대여	10,000	20,000	30,000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0-531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9. 10.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안 제9조의3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9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조의3제1항제3호의 신설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개정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간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서면조사서(제9조의2 관련)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제 조 업 ()	
○ 법인소재지 :	건 설 업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판 매 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운 송 업 ()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기 타 ()	

정 선 군 수 귀하
(297mm²×210mm²)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정선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우편번호 : 233-800

※ 문의사항 전화 : (033) 560-228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소재지	강원도 00시·군 00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	--	--------	------------------------	------	--	----------

구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6조의11(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 법인세법제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
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 ② **산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76조의12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단위 : m², 원)

[illegible] $(297\text{mm}^2 \times 210\text{mm}^2)$

※ 서식 2. 주민세(재산분) 신고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사업년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②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③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④=(a-b)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④×(5/1,0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3.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명세서(정선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정선군공고 제2010-538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4.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비 신청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지원대상)
 - 전농업인(개인별) ⇒ 전농업인 및 영농회원단체(개인 및 단체)
- 제5조(지원금의 신청)
 - 농업인(개인별)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농·축협(일괄)
- 제6조(보조금의 지급)
 - 농업인(개인별) ⇒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농·축협(일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10. 4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전화 560-2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농업인을” 을 “전농업인 및 영농회원단체(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를” 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 중 “농업인” 을 각각 “농업인 등”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 ①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안전공제 가입기관인 농·축협에서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농·축협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단체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휴대폰)				
보험가입 내 용	보 험 종 류				
	보 험 회 사				
	가 입 금 액	₩			
	보 험 료 (정산액)	계	국·도비	군 비	지역농협
보험료신청액 (군비부담액)	금	원 (₩)			
지원 보험료 입 금 계 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명의자 :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농·축협장 ○ ○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공제증권 사본 1부.

단체가입자는 개별 명단 1부.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생략)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6. (생략)

④~⑥ (생략)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0-539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3.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사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다만, 우수 식재료는 학교급식관리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5조)
- 학교급식관리센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재료 공급비용은 일반식재료와 우수식재료의 차액 발생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560-2185, 팩스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비의 범위)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급식비는 그 범위를 중식비용에 한한다.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비는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학교급식관리센터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학교별 지원신청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결안건에 대하여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게 학교급식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는 일반식재료의 구입비를 관리센터에게 지급하고, 관리센터는 우수식재료 공급에 따른 차액 발생금액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7조(관리센터의 의무) ①관리센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적기에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는 구입, 보관, 공급의 단계에서 우수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변형, 변질, 부패 등으로 식재료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공급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으로 통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되, 관리센터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공급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군수에게 집계된 자료를 제출한다.

④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③관리센터는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관리센터에 대한 장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신청서

지 원 신 청 자		학교명 (시설명)			
		대표자 (학교장)		주소	
급식시설		위 치			시설면적 ㎡
학 교 급식비	학생현황	총학생수	명	급식인원	명
		급식지원신청 학생수 (교특, 외부지원 인원 제외)	명	급식일수	일
	지 원 신청내역	1인당 수익자부담 학교급식비 (우유값 제외)	원	지원신청 급 식 비	원
	학교급식 운영계획		※ 붙임 1		
우 수 식재료	지원신청 품목수		개 품목	지원신청 식재료비	원
	지원신청 내역		※ 붙임 2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기관명(학교명)

성 명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

(붙임 1)

학교급식비 운영계획

☐ 운영현황

○ 학교급식 운영형태 :

-

-

○ 학교급식 인력현황 :

- 관리자 : 영양(교)사 명,

- 조리종사원 : 명

○ 총 학생현황 : 명

○ 총 급식인원 : 명

○ 1식 급식단가 : 원(교특지원금 포함),

○ 학교급식 지원현황

사업명	지원인원	예산금액	비고
도서벽지 식품비 지원			학생수 전체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			학생수 전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지원 인원
특수학급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
외부기관 학교급식비 지원			“

○ 학교급식 특색사업 :

☐ 추진계획

○ 지원신청 학생수 : 명 (교특, 외부지원 인원 제외)

○ 급식일수 : 일

○ 급식비 단가 세부내역(단위/원, 현재 수익자부담 내역과 동일)

식품비(우유값 제외)	운영비	인건비	합계

○ 지원신청 급식비 총액 : 원

- 산출내역(우유값 제외) : 원

(붙임 2)

우수식재료 지원신청내역

(학교명 : ○○학교)

구 분	품명	규격	소요기간	소요량	단 가	금 액	비 고
소 계							
야채류							
잡곡류							
양념류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신청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시설명)		학교급식비 지원내역				소요예산			비고
		총 학생수	급식지원 신청학생수	급식단가	급식일수	지원신청 급식비(합계)	학 교 급식비	우 수 식재료비	
합 계									
유 치 원	소계								
초 등 학 교	소계								
중 학 교	소계								
고 등 학 교	소계								

※ 첨부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비 지원계획(확정)

【유치원】

(단위 : 천원)

학 교 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			지 원 신청금액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총학생수	급 식 학생수	비급식 학생수			

【초등학교】

(단위 : 천원)

학 교 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			지 원 신청금액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총학생수	급 식 학생수	비급식 학생수			

【중학교】

(단위 : 천원)

학 교 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			지 원 신청금액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총학생수	급 식 학생수	비급식 학생수			

【고등학교】

(단위 : 천원)

학 교 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			지 원 신청금액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총학생수	급 식 학생수	비급식 학생수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	품 목	단 가	수 량	금 액(원)
계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급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시설장)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정 선 군 수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비용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공급내역 및 지급신청	공급기관 (학교명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총 공급내역			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지급 신청금 액 (원)
			품 목	수량 (kg)	금액 (원)	품목	수량 (kg)	금액 (원)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정 선 군 수 귀하